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U: "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dvances](#)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화하고 해당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별보고서 개정안의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다국적기업들은 EU국가 이외의 모든 조세관할지역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해야 하며, 조세피난처 지역에서 영위한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납세정보는 별도로 공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본 개정안이 EU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약 6천여개 다국적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 초안은 강화된 국가별보고서 제출 규정의 적용대상, 공개대상정보 및 정보공개범위 그리고 정보공개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개정안 초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대상:** EU 국가내 법인 혹은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비유럽 다국적기업 포함) 중 연결 매출 7.5억 유로(약 1조원)를 초과하는 기업

삼정KPMG 이전가격본부

7 June 2016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

(Tel: 02-2112-0982)

- **제출형식:** Stand-alone report (이하 “독립적 보고서”)형식
- **공개대상정보**
 - 다국적기업의 조세관할 지역별 사업활동 개관
 - 종업원 수
 - 매출정보(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간 거래 모두를 포함)
 - 세전이익/손실
 - 당기 미지급법인세
 - 당기 법인세납부액(실납부세액과 부과세액간 차이에 대한 설명 포함)
 - 누적 이익잉여금

상기 내역은 납세자의 각 EU국가별 사업활동 및 조세피난지역에서 영위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총체적 정보와 함께 모든 EU국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정보에는 EU국가 이외에도 다국적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조세관할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기간: 모든 외부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독립적 보고서 형식으로 최소 5년간 납세자의 웹사이트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Back to top](#)

[Belgium: Draft law, country-by-country reporting and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벨기에서는 현재 국가별보고서와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입법초안의 법안 통과가 임박하였습니다.

동법에서 다루는 국가별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규정과 관련하여 입법초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 **제출대상:** 연결 매출이 7.5억 유로(약 1조원)를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벨기에 내 자회사 혹은 고정사업장을 소유한 다국적기업(또는 “납세자”)
- **제출기한:** 다국적기업 최종 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추가적으로, 다음 세가지 요건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벨기에법인 혹은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벨기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과 영업소득의 합이 5천만 유로(약 700억원)이상인 납세자
- 자산 총액이 10억 유로(약 1조3천억원) 이상인 납세자
- 연평균 정규직 종업원 수가 100여명 이상인 납세자

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

- **제출대상:**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
- **제출기한:** 다국적기업 최종 모회사의 사업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개별기업보고서 (Local file)

- **제출대상:**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
- **제출기한:** 규정된 제출기한 없음
- **특이사항:** 개별기업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1) **Part 1:** 계열 그룹 내 개별 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 2) **Part 2:** 주요 특수관계 거래(연간 국외특수관계회사간 거래 금액 1백만 유로(약 13억원)초과)와 관련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정보, 재무현황 등(단, 다국적 기업 그룹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 되는 경우 사업군별로 제출)

벌금규정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1,250유로에서 최대 2.5만유로(약 16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시기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제출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ack to top](#)

2016년 5월 12일, 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미국세청" 또는 "IRS") 산하 The 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이하 "LB&I") 는 납세자를 위한 section 482 활용지침에 대한 해설을 담은 'IRS 조세실무편람'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편람에 따르면 section 482를 통해 IRS는 납세자의 소득 중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한 이익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통해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section 482는 일반적으로 IRS가 해당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도 동 규정의 적용이 허용됩니다.

-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결과와 실제 부과된 소득세액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다만, 납세자가 해당 거래를 정상가격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함과 동시에 소득세 신고기간을 준수하여 세금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한함)
- IRS는 section 482의 적용이 과세소득의 증가로 귀결되며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허용할 수 있음(다만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익 배분이 과세소득의 감소로 귀결되는 경우 납세자는 제출기한 연장 및 경정청구 불가)
- 납세자는 IRS가 section 482의 적용을 제외한 경우 과세관청에 상쇄 청구(setoff)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상쇄청구는 납세자와 section 482 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동일한 특수관계자간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 거래가 발생한 동일한 과세연도, 그리고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함

KPMG 의견

IRS 조세실무편람은 IRS조사관들의 다양한 거래 및 특정 이슈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직면해 있거나 동 편람에 소개된 이슈들과 관련된 납세자(또는 세무 대리인)들은 해당 편람의 검토를 통해 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IRS 조세실무편람은 납세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무신고 준비기간 중 적절한 증빙서류 준비
- 특정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
- IRS 서면세무조사에의 적절한 대응 방법

IRS의 세무조사를 유예한 납세자들은 IRS 조세실무편람을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IRS의 요청사항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PMG는 다국적기업들이 실무에 있어 금번 section 482 활용지침에 대한 해설을 담은 IRS 조세실무편람의 적절한 활용을 권고 드립니다.

[Back to top](#)

[Czech Republic: Transfer pricing examination trends](#)

체코 과세당국은 법인세 신고서에 이전가격 정보(특수관계자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요건을 발표하였고 해당 요건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약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말미암아 세무조사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체코 과세당국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일연도 혹은 연속손실 및 손익의 등락 폭이 심한 기업들이 주로 과세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재무부는 OECD와 EU의 행보에 발맞추어 체코 과세당국 역시 '이전가격 검토 세부 실행방안(Action plan for transfer pricing check)' 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체코 과세당국에 따르면, 지난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한 기업은 약 10,00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코 과세당국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전가격 검토 세부 실행방안의 적용 대상이 될 기업들의 선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기준(Risk criteria)을 확정하였습니다.

- 주요 경영조직 및 경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리적 소재지
- 중요한 사업이익의 실질 수익권자(Beneficial owner)
- 신고된 거래의 실제 발생여부
- 납세자의 경제적 성격에 부합하는 비용의 사용 여부
- 특수관계회사간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의 합리적 산정여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여부 포함)
-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의 배분
- 부당하게 높은 경영자문료, 로열티, 또는 금리
- 기업 구조조정
- 장기간의 손실 인식

추가적으로, 체코 재무부는 상기 이전가격 검토 결과 및 2015년과 2016년 상반기에 조세피난처에서 수행된 조세피난 행위에의 강도 높은 적발을 통해 최대 CZK 10억(약 500억원)을 추가 과세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